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04
----------	-------

발의연월일 : 2017. 12. 18.

발의자 : 조승래 · 김민기 · 김정우  
남인순 · 박찬대 · 설훈  
송기현 · 유동수 · 윤관석  
이해찬 · 전재수 · 제윤경  
최운열 · 추미애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

임(안 제49조).

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시장·광역시장·<u>도지사</u>· 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 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 ----- ----- ----- ----- <u>특별자치</u> <u>시장·도지사</u>----- ----- ----- ----- ----.</p>